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58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정진욱 · 오세희 · 박균택
조인철 · 정준호 · 양부남
전진숙 · 안도걸 · 김한규
박해철 · 이개호 · 이언주
진성준 · 강준현 · 이주희
권향엽 · 장종태 · 이재관
이용우 · 이광희 · 박용갑
박선원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KS인증·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4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
 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정지 업무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제20조제2항에 따
른 조사 업무의 지원
 4.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관련 정보의 관리
 5.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
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1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2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u> ① <u>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 인증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1.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u> <u>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정지 업무의 지원</u> <u>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현장조사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지원</u> <u>4.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관련 정보의 관리</u> <u>5.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u>

정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른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

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략) <u><신설></u> <u>2.</u> (생략)	----- -----. 1. (현행과 같음) <u>2. 제22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u> <u>의 임직원</u>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	---